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280호

## 보안업무 시행세칙

확 정 일 : 2026년 1월 26일

시 행 일 : 2026년 2월 4일

# 보안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1. 제안사유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50호, 2022.11.28.)」,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1656호, 2023.9.12.)」 및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566호, 2022.11.18.)」 개정사항 반영 및 시행세칙의 현행화

## 2. 주요골자

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및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 국토교통부훈령 제명 변경 및 추가(안 제2조)
- 용어 신설 및 조항 제목 변경(안 제4조)

### 나. 기 타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자구 정비 등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 조항 제목 변경(안 제9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9조)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보안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제2조의 “정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으로 하고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의 제목을 “보안담당부서장”에서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보안담당부서장”을 “보안담당부서장(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라고 하며, “본사에 보안업무분야별 분임보안담당자를 둔다”를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사에 보안업무 분야별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보안담당관은 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각 부서장은 부서별 고유 업무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업무 심사분석)를 삭제한다.

제7조에서 ‘직원 임용예정자나 그 밖에’를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을 “시설보안”에서 “시설·통신보안”으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시설·통신보안) 공사 기밀을 보호하고 인원·중요시설·장비 및 자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관리하고, 중요 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등을 위한 시설·통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자료보안) 각종 자료(비밀, 대외비, 문서, 보고서, 설계도서, 항공사진, 위성사진, 컴퓨터, 전산 자료, 보조기억매체, 정보통신 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 등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등을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이의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해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을 “지리정보보안”에서 “공간정보보안”으로 변경하고, “각종 지리 정보 자료에 의하여”를 “각종 공간 정보 자료에 의하여”로 변경하고, “지리 정보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공간정보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으로 변경한다.

제15조의 제목을 “사업후보지 개발업무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서 “후보지 업무 보안”으로 변경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후보지 업무 보안) 후보지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협의를, 관계 서류 작성 등 입안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직무 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를 “직무 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료”로 변경하고 “기획·입안 단계에서부터”를 “계획 수립 시부터”로 변경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외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주요 정책사업 등을 외부 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을 “정보공개 시 보안성 검토 철저”에서 “정보공개 시 보안관

리”로 변경하고,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여”를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로 변경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국회 등 대외 자료 제공 시 보안관리) 국회·지방의회·정당·외국기관 등 대외 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 자료를 제출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임의·개별적 자료 제출을 지양하고, 각종 자료 등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포 범위를 결정한 후 배포 범위 이외에는 일체 배포를 금지하여야 하며, 회수·과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불가 시 익일 시행”을 삭제한다.

제25조에서 “따로 정하는 보안지침”을 “보안업무 처리지침”으로 변경한다.

보안업무 시행세칙 대비표를 삭제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b>제2조(적용범위)</b>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안업무 운용관리에 있어 정부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b>제2조(적용범위)</b>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안업무 운용관리에 있어 <u>국가정보원</u> 「보안업무규정」 및 동 <u>규정</u> 시행규칙, <u>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u> 과 <u>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u> 및 <u>그 밖의</u>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자구 정비</p> <p>국 토 교 통 부 훈령 제명 변경 및 추가</p>
<p><b>제4조(보안담당부서장)</b> 효율적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부서장은 보안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하며, 보안담당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본사에 보안업무분야별 분임보안담당자를 둔다.</p>	<p><b>제4조(보안담당관)</b> 효율적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부서장(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보안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하며, <u>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u> 본사에 보안업무 분야별 <u>분임보안담당관을</u> 둔다.</p>	<p>조항 제목 변경</p> <p>보안담당부서장의 명칭 정의</p> <p>분임보안담당관의 역할 및 명칭 정의</p>
<p><b>제5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b>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기본 목표 및 업무지침에 따라 연도별</p>	<p><b>제5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b> 보안담당관은 &lt;삭제&gt; 연도별 보안업무시행계획을 <u>수립·실시</u>하여</p>	<p>자구 정비</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각 부서장은 부서별 고유 업무 기능에 따른 보안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세부실천을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야 하고, 각 부서장은 부서별 고유 업무에 따른 보안대책을 <u>마련하여</u>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자구 정비</p>
<p>제6조(보안업무 심사분석) 보안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보안업무 시행계획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각 부서장은 실시 결과 분석과 보안업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강구를 위하여 자체 보안업무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lt;삭제&gt;</u></p>	<p>불필요한 조항 삭제</p>
<p>제7조(인원보안) 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직원 임용예정자나 그 밖에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인원보안) 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u>&lt;삭제&gt;</u>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신원조사 현행화 반영, 불필요한 문구 삭제</p>
<p>제9조(시설보안) 공사의 기밀 번호, 인원·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p>	<p>제9조(<u>시설·통신보안</u>) 공사의 <u>기밀을 보호하고</u> 인원·중요 시설·장</p>	<p>조항 제목 변경 자구 정비</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등을 외부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운영한다.</p>	<p>비 및 자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u>관리하고, 중요 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등을 위한 시설·통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시설·통신보안 내용 통합</p>
<p><b>제10조(자료보안)</b> 각종 자료(비밀, 대외비, 문서, 보고서, 연구 보고서, 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지도, 항공사진, 위성사진, 컴퓨터(Desktop computer, Notebook computer, 휴대 전화, Digital Camera, MP3, MP4, PDA, PMP 등), 전산 자료,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웹 하드 메일 게재, 게시판, 전자우편, 메신저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이용한 데이터 송신·수신 등을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이의 유인,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해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b>제10조(자료보안)</b> 각종 자료(비밀, 대외비, 문서, 보고서, 설계도서, 항공사진, 위성사진, 컴퓨터, 전산 자료, 보조기억매체, 정보통신 수단(<u>전자우편, 메신저 등</u>) 등을 이용한 데이터 <u>송·수신</u> 등을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이의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해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자구 정비</p>
<p><b>제11조(통신보안)</b> 전화, 전신, 팩시밀리, 정보통신 송신·수신</p>	<p><u>&lt;삭제&gt;</u></p>	<p>제9조로 이동</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등 각종 통신 수단에 의하여 소 통되는 제반 정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비인가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거 나 누설되었더라도 정보의 시기 를 지연시키기 위해 제반 수단 과 보호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4조(지리정보보안) 각종 지리 정보 자료에 의하여 보호, 관리, 유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각 종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리정보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간정보보안) 각종 <u>공간</u> 정보 자료에 의하여 보호, 관리, 유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각 종 외부 위협으로부터 <u>공간</u>정보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u>마련</u>하여야 한다.</p>	<p>조항 제목 변경  자구 정비</p>
<p>제15조(사업후보지 개발업무 보 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사업후보지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관계 서류 작성 등 입안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후보지 지정 제안 주관부서 장은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p>	<p>제15조(<u>후보지 업무 보안</u>) 후보 지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협의 관계 서류 작성 등 입안 과정에 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 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 록 <u>후보지 보안관리를 철저히</u> <u>하여야 한다.</u></p>	<p>조항 제목 변경  자구 정비</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16조(중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중요 정책사업 등을 검토·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경우, 누설되었을 때 이해 관계자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 사회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공표 또는 공개될 때까지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기획·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 단계별로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16조(중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중요 정책사업 등을 검토·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경우, 누설되었을 때 이해 관계자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u>필요로 하는</u> 자료, 사회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공표 또는 공개될 때까지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u>계획 수립 시부터</u>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자구 정비  자구 정비</p>
<p>제17조(외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주요 정책사업 등을 외부 용역 발주 시에는 기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p>	<p>제17조(외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주요 정책사업 등을 외부 용역 발주 시 <u>&lt;삭제&gt;</u> 보안대책을 <u>수립·시행하고</u>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p>	<p>자구 정비</p>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p>제18조(연구업무 등에 보안 관리) 연구개발주관부서장은 연구원의 연구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며, 기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시 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 을 수립·조치하는 등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불필요한 조항 삭제</p>
<p>제19조(정보공개 시 보안성 검토 철저) 정보 공개 시에는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확정 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정보공개 시 <u>보안관리</u>) 정보 공개 시에는 <u>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u> 미확정 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p>	<p>조항 제목 변경 자구 정비</p>
<p>제20조(국회 등 대외 자료 제공 시 보안관리) 국회·지방의회·정당·외국기관 등 대외 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 자료를 제출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창구 일원화를 통한 각 부서의 임의·개별적 자료 지원을 지양하여야 하고, 각종 자료 등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포 범위를 판단 결정하고 배포 범위 이외에는 일</p>	<p>제20조(국회 등 대외 자료 제공 시 보안관리) 국회·지방의회·정당·외국기관 등 대외 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 자료를 제출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lt;삭제&gt; 각 부서의 임의·개별적 <u>자료 제출을 지양하고</u>, 각종 자료 등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포 범위를 <u>결정한 후</u> 배포 범위 이외에는 일체 배포를 금지하여야 하며,</p>	<p>자구 정비</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체 배포를 금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는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 일자 등을 명기, 최소 부수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 제공 부서는 회수·과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u>&lt;삭제&gt;</u> 회수·과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u>마련</u>하여야 한다.</p>	<p>자구 정비</p>
<p>제24조(사이버 보안 진단) 보안담당관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공 기관 개인정보 및 자료 유출 예방과 공직자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세번째 수요일(불가시 익일 시행)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한다.</p>	<p>제24조(사이버 보안 진단) 보안담당관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공 기관 개인정보 및 자료 유출 예방과 공직자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세번째 수요일을(<u>&lt;삭제&gt;</u>)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한다.</p>	<p>자구 정비</p>
<p>제25조(보안 지침)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따로 정하는 보안 지침에 따른다.</p>	<p>제25조(보안 지침)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u>보안업무 처리지침</u>에 따른다.</p>	<p>자구 정비</p>

# 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 2026.1.26 규정 제280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절한 보안 업무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보안업무 운용관리에 있어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1.26>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보안담당관) 효율적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보안담당부서장(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보안업무 전반에 대해 총괄하며,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사에 보안업무 분야별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1.26>

제5조(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 보안담당관은 연도별 보안업무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고, 각 부서장은 부서별 고유 업무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6>

제6조(보안업무 심사분석) <삭제 2026.1.26>

제7조(인원보안) 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은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신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26>

제8조(문서보안) 문서는 일반문서와 비밀문서로 구분되며 일반문서는 정부공문서 규정에 따라 보관 관리하며, 비밀문서는 정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호 관리하여야 하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로 구분하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별표 1의 기본 분류 지침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 세부 분류 지침에 따른다.

제9조(시설·통신보안) 공사의 기밀을 보호하고 인원·중요 시설·장비 및 자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관리하고, 중요 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등을 위한 시설·통신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6>

제10조(자료보안) 각종 자료(비밀, 대외비, 문서, 보고서, 설계도서, 항공사진, 위성사진, 컴퓨터, 전산 자료, 보조기억매체, 정보통신 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 등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등을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이의 사용, 배포, 제공, 관리 등에 대해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 정보사항의 대외 유출 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6.0.00>

제11조(통신보안) <삭제 2026.1.26>

제12조(정보보안) 정보보안의 기본 목표는 각종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 안보 및 국가와 공사의 이익 관련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는데 있다.

제13조(개인정보보안) 개인정보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준법성이 충족할 수 있도록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14조(공간정보보안) 각종 공간정보 자료에 의하여 보호, 관리, 유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각종 외부 위협으로부터 공간정보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6>

제15조(후보지 업무 보안) 후보지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협의, 관계 서류 작성 등 입안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보지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6>

제16조(중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중요 정책사업 등을 검토·입안·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안전보장,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경우, 누설되었을 때 이해 관계자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료, 사회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공표 또는 공개될 때까지 그 영향의 정도에 따라 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6>

제17조(외부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 주요 정책사업 등을 외부 용역 발주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6>

제18조(연구업무 등에 보안 관리) <삭제 2026.1.26>

제19조(정보공개 시 보안관리) 정보 공개 시에는 정보공개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확정 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6>

제20조(국회 등 대외 자료 제공 시 보안관리) 국회·지방의회·정당·외국기관 등 대외 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 자료를 제출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각 부서의 임의·개별적 자료 제출을 지양하고, 각종 자료 등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포 범위를 결정한 후 배포 범위 이외에는 일체 배포를 금지하여야 하며, 회수·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6>

제2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전시, 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사가 보관 관리 중인 비밀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하기 위하여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한다.

제22조(개인 보안) 공사의 임원·직원은 확고한 보안의식으로 직무상의 비밀을 보호하고 보안을 생활화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감사의 실시) 보안담당관은 자체보안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감사 및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사이버 보안 진단) 보안담당관은 해킹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공공기관 개인정보 및 자료 유출 예방과 공직자 보안 의식 제고를 위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6.1.26>

제25조(보안 지침)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보안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6.1.26>

부칙

이 시행세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시행세칙은 202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